

# 고용유지비용 대부

## ● 사업목적

- (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비용 대부를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와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)지역협력과

## ● 사업내용

- (지원대상) 2020년 7월 1일 이후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·제출한 우선 지원대상기업
  - ※ 다만, 휴·폐업 신고 사업장, 고용·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(대부 신청 전 완납 시 대부 가능),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업장,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와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업주는 대부 불가

## ● 지원내용

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**휴업·휴직수당**

**한도** 최소 1백만원 이상, 총 한도액은 5억원(대부금액 단위는 1만원)

**이율** 연 1.0%

- ※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(공동대표는 각각 연대보증) 필요
- ※ 대부금 산정대상이 되는 고용유지 조치(휴업 또는 휴직)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대부 취소

## ● 지원방법

매월 사업주가 지급 예정인 고용유지비용 한도 내에서 임금 지급 전일까지 대부금액 신청

- 2회차부터는 직전 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야 신청 가능

## ● 지원방법

- 최종 대부 실행일로부터 1년 거치 일시 상환  
(총 대부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년 균등분할상환 선택가능)
-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거치기간 중 대부약정에 따라 대부금 우선 상환  
(고용센터에서 공단으로 상환)
  - ※ 원금 연체 시 지연이자율 연 9.0%

## ● 신청기간

---

‘20.8.3. ~ ’21.6.30.까지

신청접수 8.3.이후부터 (온라인, 근로복지서비스(<http://welfare.kcomwel.or.kr>)은  
8.17이후 가능)

## ● 신청방법

---

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, 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내

- 인터넷: 근로복지서비스(<http://welfare.kcomwel.or.kr>) 신청 가능

## ● 지원문의

---

- 복지사업 콜센터 : 1644-0083

-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: [welfare.kcomwel.or.kr](http://welfare.kcomwel.or.kr)